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564 호 2026. 6. 4.(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4호[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5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26호[하천 점용허가 고시(26-38)]..... 3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39호[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 (허가26-33)].....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49호[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50호[「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772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44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10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11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4호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아랫마을교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892-165번지	복구 건설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2(제3종 시설물의 범위)의 범위에 해당	매년 2월 28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안교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692-1번지				
시례교	울산광역시 복구 시례동 608-60번지				
창평1교	울산광역시 복구 창평동 1292-3번지				
시례새교	울산광역시 복구 가대동 163-1번지				
신전소교	울산광역시 복구 신현동 184번지				
금천1교	울산광역시 복구 어물동 1240-33번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5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천곡동 739-1 외 1필지	덕곡길 47-1	2026. 6. 3.	2026. 6. 4.	2004. 8. 9.	옛 지명인 덕곡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시례동 126	시례새터길 248-3	2026. 6. 3.	2026. 6. 4.	2004. 8. 9.	기존 자연마을인 시례새터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240-7	곡리5길 9	2026. 6. 3.	2026. 6. 4.	2018. 5. 10.	옛 지명인 골짜기 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242-9 외 1필지	곡리4길 16	2026. 6. 3.	2026. 6. 4.	2018. 5. 10.	옛 지명인 골짜기 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송정동 1246-2	곡리3길 11	2026. 6. 3.	2026. 6. 4.	2018. 5. 10.	옛 지명인 골짜기 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함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6 - 126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복구청 주민자치과		
주 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 용 위 치	○ 신천동 745-118번지 일원	하 천 명 칭	○ 매곡천
점 용 내 용	○ 2026년 제1회 OK 생활민원 현장 서비스의 날 행사	점 용 면 적	○ 400m <sup>2</sup>
점 용 기 간	○ 2026. 6. 16.(화) 09:00 ~ 1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39호

##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7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신인승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1, 102동 402호 (신정동)		
점용 위치	○ 달천동 463번지 일원	노선명	○ 농서로
점용 목적	○ 신축공사에 따른 하수시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7.0m ○ A(일시) = 16.6㎡ ○ A(계속) = 1.05㎡
점용 기간	○ 일시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계속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749호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개정(2025. 11. 11.)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 주민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하여 저탄소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구체적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 나.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신설(안 제27조제4항제3호)
- 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3.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 및 제67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환경위생과
- 전화번호 : 052)241-7761 팩스번호 : 052)241-7769
- 전자우편(E-mail) : kieshan80@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력하여야”를 “협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촉진하여야”를 “촉진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1조 중 “구매하여야”를 “구매해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23조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전개하여야”를 “전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28조제1항 중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u>노력하여야</u> 한다.</p> <p>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u>시행하여야</u> 한다.</p> <p>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u>노력하여야</u> 한다.</p> <p>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u>노력하여야</u>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 ----- <u>노력해야</u> -----.</p> <p>② ----- ----- ----- ----- ----- <u>시행해야</u> -----.</p> <p>③ ----- ----- ----- ----- <u>노력해야</u> -----.</p> <p>④ ----- ----- ----- ----- ----- <u>노력해야</u> -----.</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u>노력하여야</u>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u>협력하여야</u> 한다.</p> <p>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u>노력하여야</u> 한다.</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 ----- ----- <u>노력해야</u> -----</p> <p>----- <u>협력해야</u> -----.</p> <p>② ----- ----- ----- <u>노력해야</u> -----.</p>



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② (생략)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  
-----  
----- 수립·시행해야 -----  
-----.

② -----  
-----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 공표해야 -----.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  
----- 점검해야 -----.

제3장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0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

회피해야 -----.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  
-----  
-----  
- 수립·시행해야 -----.

② -----  
-----  
-----  
-----  
----- 촉진해야 -----.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  
-----  
-----  
-----  
----- 노력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  
-----  
-----  
-----  
-----  
-----  
-- 노력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  
-----  
-----  
-----

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탄소흡수원등의 확충)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4. (생략)
- 5. 그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  
-----  
----- 구매해야 -----  
----- 노력해  
야 -----.

제22조(탄소흡수원등의 확충) ① -----  
-----  
-----  
----- 수립·시행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  
-----  
-----  
----- 작성해야 -----  
-----.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밖-----  
-----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  
-----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2. (생략)

<신 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

----- 전개해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  
-----  
----- 전개해야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저탄소 실천 우수 단체 및 아파트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  
-----  
-----  
----- 도모해야 -----  
-----.

② -----  
-----  
-----  
----- 노력해야 -----  
-.

③ -----  
-----

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 노력해야  
 -----.

# 울산광역시 복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작성자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한수정(241-7761)

## 현행규정

### □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

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척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 제18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9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

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1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탄소흡수원등의 확충)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작성)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 제24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

제25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3.>

- 1.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 2.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참가자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 지원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2.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 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등
-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30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 및 영 제7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1조(포상)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신설 2025.7.3.>

- ① 구청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298호, 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복구 기후변화대응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제1427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6 - 750호

#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운영중인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돌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 위원 추가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안 제12조제3항)
- 나. 간사 지정 직위 조정(안 제12조제6항)
- 다.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 운영기준 정비(안 제13조제2항)
- 라.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 3. 관계법령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아래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2026년 6월 2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통합돌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6층 통합돌봄과
- 전화번호 : 052)241-7922 / 팩스번호 : 052)241-7639
- 이 메 일 : [mu111@korea.kr](mailto:mu111@korea.kr)

### 6.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공공기반시설**”을 “**공공 기반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인별지원계획**”을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개인별지원계획**”을 “**개인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울산중부지사장**”을 “**울산중부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동울산 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회**”를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p> <p>1. ~ 3. (생략)</p> <p>4. 통합지원 제공 <u>공공기반시설</u>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p> <p>5. ~ 7. (생략)</p> <p>③ (생략)</p>	<p>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공공 기반시설</u>----- -----</p> <p>5. ~ 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u>구청장</u>의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u>구청장</u>은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u>개인별지원계획</u>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 ----- <u>개</u> <u>인별 지원계획</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p>	<p>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 ----- -----</p>



## 현행 규정

### □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복구에 거주하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라 함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울산광역시 복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이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회의)

-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 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 3.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지원)

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제8조, 제11조에 따른 교육 및 회의 참여자에게 다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부 칙<제1450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77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53-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153-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37호선) 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37호선) 도로개설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
  - (당초) 1,227.9m<sup>2</sup>(B=10~16m L=97m)
  - (변경) 1,188.9m<sup>2</sup>(B=10~16m L=97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대표이사 전수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21, 906호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인가고시일 ~ 2026. 06. 30.
  - (변경) 인가고시일 ~ 2027.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기간 : 공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9.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10.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052-241-7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현황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번호	기정	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1		북구 달천동	153-8	대	8.0	8.0	8.0	8.0	류○관	울주군 농소면 달천리 485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0-10(달천동)				
2	2		북구 달천동	153-9	대	1.0	1.0	1.0	1.0	류○관	울주군 농소면 달천리 485	울산광역시 북구 아랫마을길 20-10(달천동)				
3	3		북구 달천동	159-7	임	18.0	18.0	18.0	18.0	문○이	울산시 동동 748	울산시 동동 748				
4	4		북구 달천동	227-4	도	15.2	15.2	15.2	15.2	울산광역시 북구						
5	5		북구 달천동	153-7	대	13.0	13.0	13.0	13.0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43 (연암동)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43 (연암동)				
6	6		북구 달천동	159-6	임	16.0	16.0	16.0	16.0	주식회사 모바일테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21, 906호 (우정동우적혁신타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6길 21, 906호 (우정동우적혁신타워)				
7	7		북구 달천동	214-6	임	15.6	15.6	15.6	15.6	울산광역시 북구						
8	8		북구 달천동	214-10	임	61.1	61.1	61.1	61.1	울산광역시 북구						
9	9		북구 달천동	892-163	천	106.0	106.0	106.0	106.0	국(건설부)						
10	10		북구 달천동	892-165	천	897.0	873.0	897.0	873.0	국(건설부)						
11	11		북구 달천동	892-168	천	66.0	54.0	66.0	54.0	국(건설부)						
12			북구 달천동	892-169	천	3.0		3.0		울산광역시 북구						
13	12		북구 달천동	892-148	천	8.0	8.0	8.0	8.0	울산광역시 북구						
합계						1,227.9	1,188.9	1,227.9	1,188.9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 - 10호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시설 운영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권한 귀속 주체 변경(안 제6조~제20조)

- (현행) 관장
- (개정) 구청장

#### 나.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안 제5조)

- (현행) 위원장 관장, 위원회 구성 10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 (개정)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회 구성 15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 문화예술회관장 추가

다. 아카데미 강사 공개채용을 통한 위촉 추가(안 제8조)

- (현행) 기별로 위촉·운영
- (개정) 정기강좌의 경우 공개채용, 수시강좌의 경우 초빙

라. 사용료의 납부기한 명확화(안 제12조)

- (현행) 관장이 정한 기한
- (개정)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사용예정일이 14일 이내이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마.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

- (현행)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바.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제14조)

취소사유	현행	개정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 전액반환 - 5일 전 50퍼센트 반환	-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사.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53조, 제156조
- 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 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
- 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8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울산 북구문화예술회관
  - 2) 전화번호 : 052)241-7382, 팩스번호 : 052)241-7359
  - 3) 전자우편(E-mail) : smuf1126@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을 “문화예술회관장 및 문화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정기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고, 수시강좌의 경우에는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허가하여야”를 “허가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허가를 받

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가  
정 구성원: 20퍼센트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원상복구하여야”를 “원상복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상하여야”를

“변상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관장”을 각각 “구청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p>③ 위원장은 <u>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u>문화업무 담당 부서장</u>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⑤·⑥ (생략)</p>	<p>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5명</u> ----- -----.</p> <p>③ ----- <u>부구청장</u>----- ----- -----.</p> <p>④ ----- <u>문화예술회관장,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원제 운영) ① <u>관장</u>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6조(회원제 운영) ① <u>구청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자원봉사자) ① <u>관장</u>은 문화예술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시설</p>	<p>제7조(자원봉사자) ① <u>구청장</u>----- ----- -----.</p>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  
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 (생략)

② 관장은 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를  
기별로 위촉·운영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  
표 1과 같이 하고, 강사의 수당은 예  
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9조(사용허가) ①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 5.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구청장은 정기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  
고, 수시강좌의 경우에는 강사를 초  
빙할 수 있다.

③ 구청장-----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허가) ① -----  
----- 구청장-----  
-----  
-----.

② 구청장-----  
-----  
허가해야-----.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 5. (생략)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생략)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 시 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① 삭제

② 관장은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활동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감면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11조(허가취소) 구청장-----  
-----  
-----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경우와 사용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② 구청장-----  
-----  
-----  
-----  
-----  
-----  
-----

③ -----  
-----  
-----  
-----

1. ~ 4. (생 략)

5.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사람(본인)  
: 20퍼센트

6. (생 략)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생 략)

2.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1. ~ 4. (현행과 같음)

5.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 20퍼센트

6.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액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반환

3.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이  
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  
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② (생 략)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관장  
은 강좌의 활성화를 위해 강사, 수강  
생과의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수강생은 학습동아리를 구성·운  
영할 수 있으며, 관장은 예산의 범위  
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  
는 각종 강좌의 수강자에 대하여 수  
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료 기준 등은 강좌 운영 계획에 포함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  
가 특별한 설비 및 홍보물을 문화예  
술회관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  
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  
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  
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  
0을 공제 후 반환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강좌 운영 활성화 등) ① 구청  
장-----

-----  
-----.

② -----  
----- 구청장-----  
-----.

③ 구청장-----  
-----  
-----  
----- 포  
함해야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  
-----  
-----

- 구청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와 홍보물은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에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검인을 아니할 수 있다.

② -----  
-----  
----- 원상복구해야 -----  
-.

③ -----  
----- 구청장-----  
-----.

제17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  
-----  
----- 다해야 -----.

② -----  
-----  
----- 변상해야 -----.

제18조(양도 및 전대금지)-----  
---구청장의-----  
-----  
--.

제19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  
-----  
구청장-----  
-----  
-.

② (생 략)

③ 판매되지 않은 입장권과 입장시  
잘라낸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파  
기한다.

제20조(입장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2. (생 략)

3. 그 밖에 관장이 문화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구청장-----  
-----  
-----.

제20조(입장제한) 구청장-----  
-----  
-----.

1. 2. (현행과 같음)

3. ----- 구청장-----  
-----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 ⑥ (생략)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 ⑩ (생략)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 10. 학원·교습·레저 서비스 관련 ④체육시설업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현금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현금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현금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기간(일수) /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times \text{위약금}$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 이용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frac{\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기간(일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frac{\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text{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울산광역시 복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이용료·주차료 등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공고 제2026 - 11호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 사용신청서 정비 및 개인정보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대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권한 귀속 주체 변경(안 제3조~제9조)

- (현행) 관장
- (개정) 구청장

나. 정기대관 경합에 따른 사용자 결정기준 신설 (안 제5조)

- (현행) 경합시 추첨으로 결정
- (개정) 정기대관 사용허가의 경우 운영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다. 각종 안내사항 전달을 위한 전자우편 기재란 신설  
(별지 제5호 서식)
-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식 정비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
-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3. 관계법령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제2호

###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라. 제출처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연암동), 울산 북구 문화예술회관
- 2) 전화번호 : 052)241-7382, 팩스번호 : 052)241-7359
- 3) 전자우편(E-mail) : smuf1126@korea.kr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20일”을 “30일”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을 “복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장”을 “복구청장”으로, “등재하여야”를 “등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를 “정기대관 사용허가의 경우 조례 제5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자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

장”을 “구청장”으로,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관장”을 “구청장”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운용하여야”를 “운용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호서식,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b>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b>				결	담당자	담당	부서장
				재			
(√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단체 회비금액 :							
개 인 회 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단 체 회 원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단체주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 회 원 접 수 증

성명(단체명)		유효기간	
주 소			
회비납부액		회원수	구좌수
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2쪽 뒤)

##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하우스어셔 등)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상행위(상품 판매, 유료사진촬영 등)를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이익 조치)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3쪽 앞)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 4. 수집 근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 1항
- 5.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 수 강 신 청 서

제 기

접수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기존회원 <input type="checkbox"/> 복구민 <input type="checkbox"/> 신규	강좌명	
신 청 자	성 명				수강료
	주 소				
	생년월일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 정 대 리 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 접 수 증

기 수	
강좌명	
성 명	
<b>수강변경 및 취소</b> ① 강의일정, 강사,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강의변경, 취소, 환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③ 해당강좌 수강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b>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b>	

(별지 제9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u>제6조의 규정에</u>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u>납부하여야</u> 한다.</p> <p>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u>제출하여야</u>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p> <p>③ <u>관장은</u>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한다.</p> <p>④ (생 략)</p>	<p>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 ----- ----- <u>제6조</u>----- ----- ----- ----- <u>납부해야</u> -----.</p> <p>② ----- ----- <u>제출해야</u> ----- ----- -----.</p> <p>③ <u>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u>제출하여야</u> 한다.</p> <p>② <u>관장은</u>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u>작성하여야</u> 한다.</p>	<p>제4조(자원봉사자) ① ----- ----- ----- <u>제출해야</u> -----.</p> <p>② <u>구청장</u>----- ----- ----- <u>작성해야</u> -----.</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등) ① 조례 <u>제9조의 규정에</u>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u>20일</u>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p>	<p>제5조(사용·수강신청 및 허가등) ① ----- ----- <u>제9조</u>----- ----- ----- <u>30일</u>----- ----- -----</p>

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관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사  
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  
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  
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날짜가 경합  
될 경우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⑥·⑦ (생략)

제6조(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  
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  
여 징수한다.

② (생략)

제7조(사용료 감면·반환 신청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  
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 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  
-----  
-----  
-----  
-----.

② 제1항-----

----- 첨부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구청장-----  
-----  
----- 등재해야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기대관 사용허가의 경  
우 조례 제5조제1항의 울산광역시 북  
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심의  
를 통해 결정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등 징수) ① -- 제12조제  
2항-----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감면·반환 신청등) ①  
--- 제13조제2항-----  
-----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제9조(수료증) 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② --- 제14조-----  
-----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③ 구청장-----  
-----  
----- 반환해야 -  
-----  
-----.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  
-----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② -----구청장-----  
-----  
-----.

제9조(수료증) 구청장-----  
-----  
----- 발급해야 -----.

제10조(운영규정) -----  
-----  
-----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  
 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운용해야 ----- . -----  
 -----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1. (생략)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 6. (생략)